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운영세칙

제정 2020. 8.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체결한 '포항공대-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기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연구원의 한글 명칭은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영어 명칭은 “Postech-Catholic Biomedical Engineering Institute”이며, 약칭은 “포-가 연구원”, “PCBMI”이라 한다.

제3조(설립목적)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포스텍이 보유하고 있는 생명과학 및 공학 분야에 있어서의 우수한 기술력 및 연구력과 가톨릭대가 보유하고 있는 임상분야에 있어서의 우수한 기술력 및 연구력을 토대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의생명공학분야의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개발된 신약, 첨단 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수익창출을 통한 양 대학교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가톨릭생명윤리에 입각하여 제3조에 규정한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생명공학분야의 첨단기술을 창조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면역조절 및 치료제 개발, 생리활성 조절제 개발, 침단의료기기 개발, 임상진단 및 영상기술 개발 등 신약, 첨단 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상용화
3. 의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의 국내외 산·학·연간의 연구협력
4. 의생명공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의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의 수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연구원에는 붙임1의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직제) ① 원장은 공동연구원을 대표하며, 그 경영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② 원장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를 운영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 및 부원장은 양교가 동의하는 자로 양교 총장이 각각 임명한다.

⑤ 제1대 및 제2대의 원장임명은 포스텍 측이 추천한 자로 하되, 3대 이후의 원장 추천권은 추후 연구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논의 결정한다.

⑥ 연구원에는 불임1의 하부조직에 부서장을 둘 수 있고 특수목적사업을 위하여 연구원 산하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⑦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지원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소속 대학의 총장이 임명한다.

1. 예산회계, 연구원 및 직원 인사업무, 각종 위원회 및 행사 지원 업무, 대외협력 및 홍보 업무, 양교 협력 업무 지원
2. 연구기기 구매·설치·관리 업무, 기기 사용료 징수 업무
3. 공간 및 시설 관리 업무, 기타 자산관리 업무
4. 연구과제 관리 및 정산 업무

제7조(원장, 부원장) ① 연구원에는 원장 및 부원장을 1인씩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의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단, 초대와 2대 원장은 포스텍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연구원을 운영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참여교수·상임 연구원·연구원과 행정인력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원장은 소속 대학의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8조(구성원) ① 연구원에는 참여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참여교수’는 양교의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연구원 목적에 부합되는 교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동 과제의 연구부서를 연구원으로 지정 또는 이관한 자로 한다.

③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수행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④ ‘직원’은 양교의 정규 직원 또는 비정규 인력으로서 연구원으로 인사 발령된 행정 및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 직원’은 포스텍 또는 가톨릭대의 정규 직원으로서 연구원으로 인사 발령된 직원
2. ‘연구원 직원’은 본 연구원에서 자체 채용하여 포스텍 또는 가톨릭대 소속으로 인사 발령된 직원

제9조(위원회) ① 연구원의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포스텍 부총장,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이 합의하여 임명하는 학교외부인사 1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학교외부인사가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가. 포스텍 및 가톨릭대 측의 입장 차이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나. 원장 또는 부원장이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뢰하는 안건

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으나 원장 또는 부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이를 다시 한 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대학에서 각각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포스텍 측 위원과 가톨릭대 측 위원을 동수로 하여 구성한다. 또한 연구원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저명 인사를 2인 이내로 포함시킨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원장이 의장이 된다.

6.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행정지원팀장이 발의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기획분과위원회와 연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분과위원회에서는 본 연구원의 장기발전을 기획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기금 조성안 수립

나. 국내의 우수기관과 협력방안 수립

다. 본 연구원의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2. 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양교 공동 연구 활성화 및 우수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한 업무 및 연구원 기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연구 사업계획 수립

나.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다. 기기 구매 심의 및 기기 운영 계획 수립

3.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원장이 부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4.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 신규임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원에는 약간의 고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원장은 연구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에 양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외 양교가 요청하는 공식자료(운영보고서 및 사업실적 등)는 적극 협조하여 제출한다.

② 전 항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양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재정)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원을 충당한다.

1. 양 학교법인이 지원한 연구정착비

2. 연구원(연구원 산하의 연구소를 포함)이 국가 연구과제나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비의 간접비

3. 연구원(연구원 산하의 연구소 포함)의 연구 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4.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협력사업, 장비임대, 시설/공간임대 등)

5. 자체 재원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6. 기타 기부금과 보조금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건물유지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 청소, 경비 등),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경비 등을 직접 부담한다.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2. 본 연구원의 조직 및 소속 참여교수, 상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명부

3. 회계관련 서류

4. 연구기자재를 포함한 재산목록

5. 연구과제 목록

제13조(공동연구) ① 연구원의 공동연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1. 연구원의 설립 이념에 부합되는 연구과제

2. 포스텍과 가톨릭대가 상호 협력하는 중점 연구 분야(면역조절 및 치료제 개발, 생리활성 조절제 개발, 첨단의료기기 및 제제 개발, 임상진단 및 영상 기술 개발 등)연구

3. 국가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수익 창출로 양 대학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연구

② 공동연구는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정한다.

③ 공동연구는 아래 각 호의 우선 순위를 둔다.

1. 1순위: 연구 유형에 상관없이 연구원에 O/H 기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과제

2. 2순위: 당장 연구원에 O/H 기여는 없지만 모두가 공인하는 양 대학 간의 실제적인 공동 연구로써 향후 연구원에 O/H 기여할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공동연구과제

3. 3순위: O/H 기여는 없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연구원의 이름으로 홍보할 수 있고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공동연구과제

제14조(공간) ① 연구원의 공간은 양교 공동연구팀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성의회관 12층은 가톨릭대 연구팀이, 13층은 포스텍 연구팀이 주로 사용한다.

② 연구공간은 다음의 우선 순위를 두어 붙임2의 공간 배정 및 사용료 부과 기준에 따라 배정·운영한다.

1. 연구원의 공동연구사업 선정팀

2. 연구원에 간접비를 기여하는 양교 공동연구팀 또는 연구팀

3. 붙임3 외부 기관 및 기업 입주 기준에 따른 외부 기관 및 기업 연구팀.

제15조(연구결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① 연구원의 참여교수 및 모든 연구원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연구 및 실험내용,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착상, 자료, 연구결과 및 연구진행 등을 매일 요약 및 기록한 일지를 소속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 및 작성 및 보관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참여교수가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의 성과라고 인정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소속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원이 배분받을 수 있다.

제16조(연구기기 관리) ① 연구원 내 설치된 연구기기는 ‘공동연구기기’와 ‘개별연구자기기’로 구분하고, ‘공동연구기기’는 연구원 예산으로 구매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구원 자산으로서 ‘공동기기’와 ‘사업기기’(Flagship Project & Star Project 지원기기)로 나누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운영한다.

1. ‘공동기기’는 연구원에서 관리·운영하며 ‘사업기기’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 사업 연구 책임자가 관리·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붙임4의 사업 종료 기기 운영 기준에 따른다.
2. ‘공동기기’ 구입예산은 연구원의 연간 운영비 잔액의 30%를 적립하여 확보하고 기존 기기 유지 및 신규 기기 도입에 대한 사항은 매2년마다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3. ‘공동기기’ 사용료는 붙임5의 공동기기 사용료 내역에 의거하여 부과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공동기기 유지·보수비를 충당한다.
4. ‘공동기기’ 및 사업기기의 폐기는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소견서를 심의하여 승인한 기기에 한해 양교 구매부서의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개별연구자기기’는 연구원에 입주한 연구 책임자가 개별 예산(연구비 등)으로 구매하여 연구원 내에 설치한 기기로서 개별 연구자가 연구원 내 기기를 도입할 시에는 입고 및 설치 장소에 대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별 연구자 기기 중 연구원 공용공간(공동기기실, 세포배양실, 저온실, 공동실험실 내 복도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기기는 붙임6의 개별연구자기기 설치 허용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운영지침)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 양교의 ‘제규정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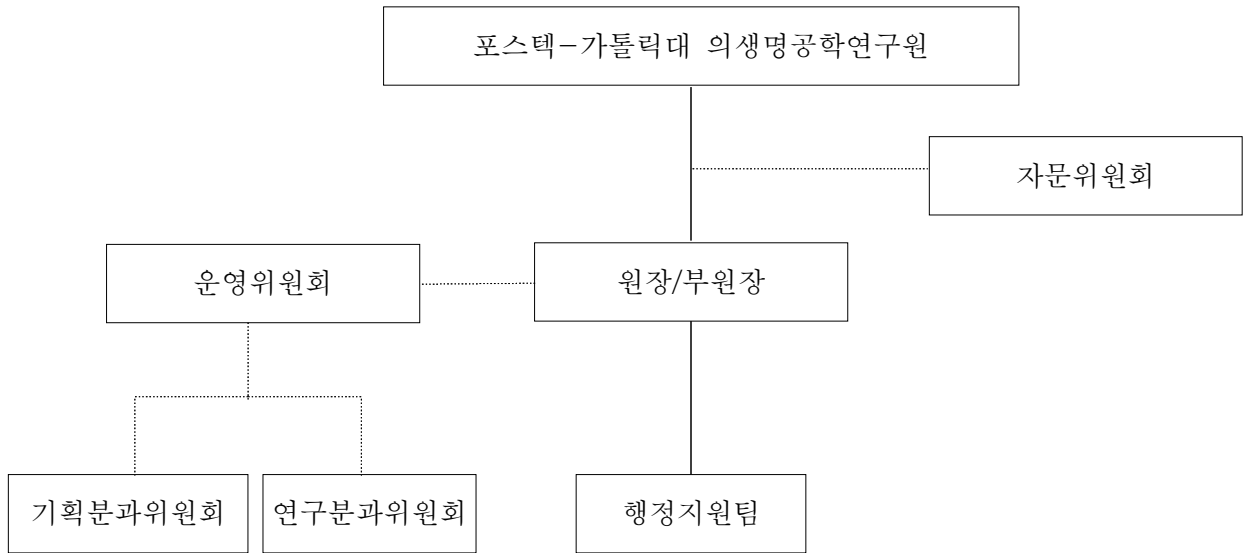
제18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공대-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기본 협약'에 따르며,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간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붙임1)

조직도



(붙임2)

공간 배정 및 사용료 부과 기준

1. 배정 기준: 양교 연구팀은 연구과제의 간접비 기여분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외부 기관 및 기업은 공간사용료를 부과하여 배정함(단, 외부 기관 및 기업의 공간사용료는 매2년마다 5% 인상).

가. 양교 연구팀

사업구분	공동실험실	연구·행정실
Flagship Project	1 unit/연구비 5천만원	1팀당 2실 무상제공(양교 각1실)
Star Project		1팀당 1실 무상제공 연구비10억이상팀 1팀당 2실 무상제공
공동연구팀지원사업 및 그 외 연구팀		연구비 5억이상팀 1팀당 1실 무상제공 연구비10억이상팀 1팀당 2실 무상제공

※ 공동연구팀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비 기준을 별도의 조정이 있을 때까지 60%로 감액하여 적용하고, 양교 간접비율 계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과제는 양교 간접비율 계상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나. 외부 기관 및 기업

(부가세 별도)

구분	실험실	연구·행정실
기관 (기업)	내부교수 기준의 1.5배부과 (1bench: 661,500원/월, 평당 120,000원/월)	단지 내 수준 사용료 부과 월 126,000원/평
	연구·행정실은 실험실 3unit 이상 사용 시 1실 배정 가능하고, 추가 요청 시에는 따로 논의하여 정함	

2. 공동실험실 운영 단위

가. 기본 단위: unit

나. 1 unit: 연구자 1인 사용 공간

- 1) 전용면적(9.91m²): 실험대&선반 (180cm*75cm: 1bench), 책상&책장(120cm*75cm: 1bench 당 1개)
- 2) 공용면적(7.43m²): 공동기기실(냉동고 및 냉장고 설치), 세포배양실(클린벤치 사용), 저온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 사용권

3. 배정 기간: 양교 연구팀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O/H 기여 기간) 동안 배정하고 외부 기관 및 기업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배정함(단, 쌍방 간에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붙임3)

외부 기관 및 기업 입주 기준

1. 대상: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외부 기관 및 기업으로 연구원 원장 및 부원장이 입주를 승인(내부결재)한 기관 및 기업(단, 외부 기관 및 기업에 배정 공간은 전체 공간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수익 공간으로써 공용공간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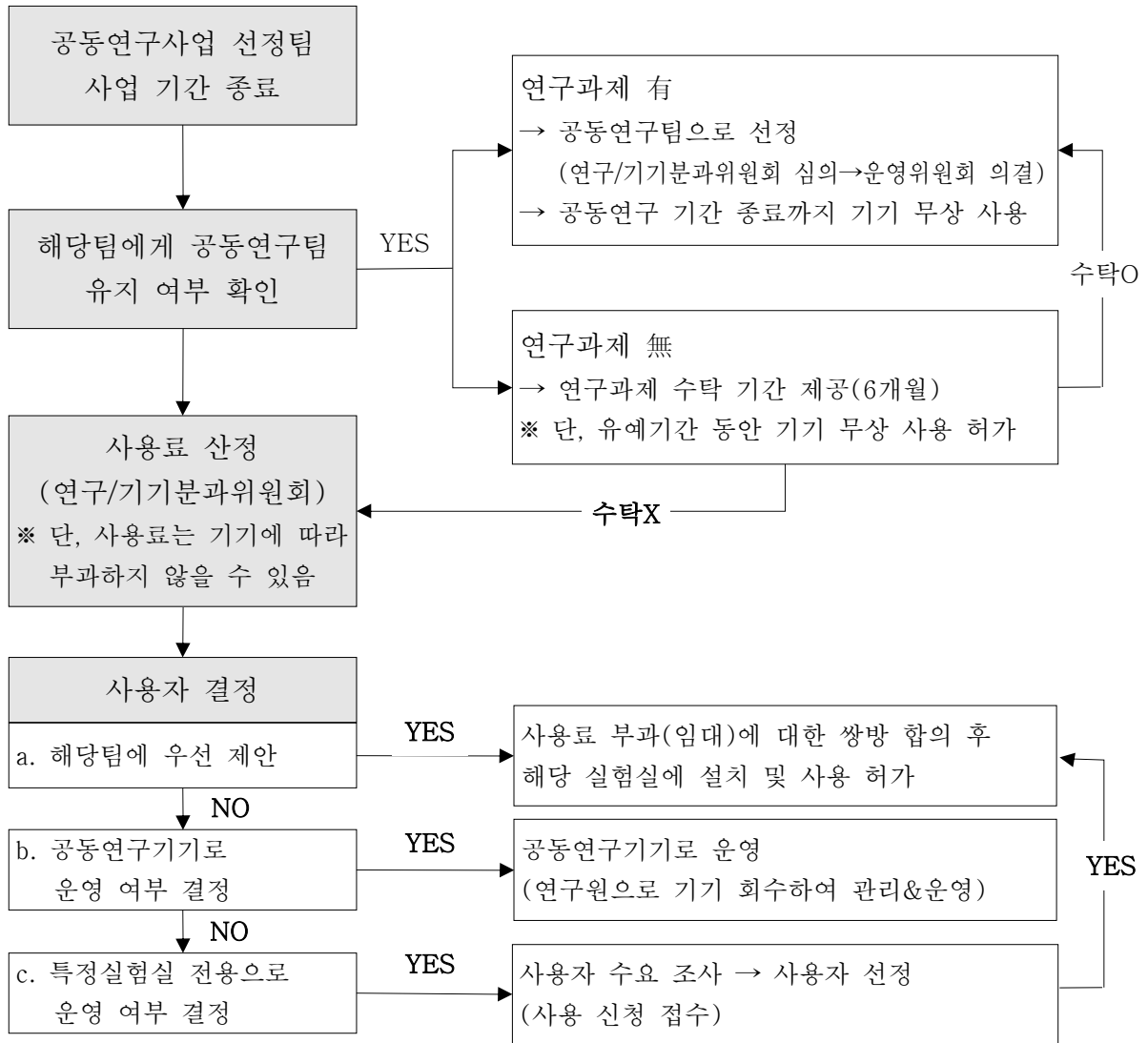
1) 기본 요건: 연구원의 공동연구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관(기업)으로서 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연구원에 선순환 효과를 줄 수 있는 기관(기업)

2) 우선 순위; 배정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 상위 순위의 기관(기업)이 우선 입주 자격을 가짐.

순위	적용 기준
1	공동연구사업 선정팀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2	양 대학의 학교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 및 기업 (양 대학 교수 벤처 등)
3	양 대학 소속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
4	그 외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를 승인한 기업

(붙임4)

사업 종료 기기 운영 기준



※ '④ - a.해당팀 우선 제안 - Yes'의 경우 해당팀 전용으로 하되 타 연구자의 사용 요청이 있을 시 연구자 간 협의 후 공동 사용을 권장함.

(붙임5)

공동기기 사용료 내역

순번	기기명 (모델명)	사용료 (원)		
		내부	외부	기준
1	Elisa reader (Spectramax PLUS384)	6,000	12,000	시간(10분/회)
2	High-performance Flow Cytometer (FACS Canto 2)	18,000	36,000	시간
3	Cell viability Analyzer (vi-Cell XR)	2,500	5,000	Sample
4	ElisSpot reader (ImmunoSpot S5UV)	30,000	60,000	Plate
5	Invivo Imaging System (Maestro 2)	26,000	52,000	회
6	Real Time PCR Machine (Lightcycler 480)	10,000	20,000	Reaction
7	Magnetic Cell Sorter (AutoMacs Pro)	13,000	26,000	Sample
		※ 시약소모품 비용 사용자 부담 - 대상소모품: Columns, Running Buffer, Washing Solution - 부과 방법: 해당 기간 내 사용기록을 근거로 사용자별 사용을 산출 후, 그 비율로 동 기간 소요된 소모품 비용을 분배하여 부과함.		
8	Stepone Real-time PCR system	2,000	4,000	회(1시간 기준)
9	Cryocut Microtome (CM1850uv)	5,000	10,000	회(2시간 기준)
10	Fluorescence Zoom Microscope(Axio Zoom.16)	10,000	20,000	회(1시간 기준)

※ 포스텍, 가톨릭대 소속 연구자 및 본원 입주자 외 사용자는 외부사용료 부과

(붙임6)

개별 연구자 연구기기 설치 허용 기준

가. 허용 기준 단위

1. 양 대학 교수: 연구원으로 이관(연구부서로 지정)된 연구비 규모
2. 입주기업: 공동실험실 사용 unit 수(입주 계약 기준)

나. 기준 미달 또는 초과 시

1. 연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기 설치된 기기를 공동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상기 1에서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기기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다. 적용 시점

1. 본 기준은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연구기기 운영 기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기 입고된 개별 연구자 기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 기 입고된 개별 연구자 기기가 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 입고 기기 출고(폐기 등)에 따른 대체 기기의 입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분	공용공간(공동기기실, 세포배양실, 공동실험실 내 복도)		
양 대학 교수	기준 기기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냉동고(Deepfreezer)	0대	1대
	Clean Bench	0대	1대
	냉장고	500ml 이하 1대	
입주 기업	기준 기기	3 unit 미만	3 unit 이상 6 unit 미만
	냉동고	0대	1대
	Clean Bench	0대	1대
	냉장고	500ml 이하 1대	